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이 승 우*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유지청구 인정학설
- III. 법적 근거와 요건
- IV. 소음방지를 위한 유지청구 판례
- V. 유지청구의 제약
- VI. 복수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유지청구
- VII. 결론

[국문초록]

토지소유자는 생활방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요건은 소음공해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법하다고 보고, 비록 거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고 입주하였다 할지라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유지청구의 판단시 고도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지청구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환경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보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해당지역의 주민 전체로 보고 있다. 한편 국가는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며, 국민은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직, 간접 혜택을 받음으로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희생에 대해 수인할 의무가 있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편 개별주체만이 소음발생원이라 할 수 없고, 소음발생원의 상호간에 밀접한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연대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개별적 유지설, 분할적 유지설, 연대적 유지설로 나뉘고, 이외에 다른 소음발생원을 공동피고로 당해 소송에 참가시켜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시킨다는 인입설이 있다. 기업은 유지를 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금전배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I. 문제의 제기

환경침해¹⁾에 대한 유지청구(留止請求)는 환경침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를 주는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다.²⁾ 작위청구는 환경침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생원의 개선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지설비의 설치 및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시설의 철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공해의 경우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작위청구는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계의 운전금지나 시설의 설치금지, 물건폐기의 금지 그리고 약취와 오수배출 등에 관한 금지명령 등이다.³⁾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의해 유지청구의 인용이 적은 이유는 i) 지역성, 공공성, 유용성 중시⁴⁾ ii) 주거생활상 수인의 필요⁵⁾ iii) 가해자의 개선조치 고려⁶⁾ iv) 적용되는 규제기준치의 허용범위⁷⁾ 등 때문

- 1)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341면; 김상천,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391면.
- 2)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368면;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133면 이하; 김상천, 전계논문, 394면.
- 3) 손윤하, 전게서, 368면 이하; 홍천용,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1992, 49면; 류지태·이순자, 전게서, 133면 이하; 大律地判, 昭和 37. 9. 26., 評論 9卷上, 民 495頁; 東京地判, 昭和 43. 9. 10., 判夕 227号, 89頁.
- 4)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 1979, 239면; 김상천, 전계논문, 419면, 421면; 東京控判大, 9. 5. 26., 評論 9卷上, 民 495頁; 東京地判, 昭和 43. 9. 10., 判夕 227号, 89頁.
- 5) 大律地判, 昭和 31. 11. 2., 下民集 7卷 11号 310頁.
- 6) 佐下地判, 昭和 32. 7. 29., 下民集 8卷 7号 1355頁.
- 7) 名古屋高判, 昭和 43. 5. 23., 下民集 19卷 56号 317頁.

이다. 이러한 유지청구는 공해에 의한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공익사업의 수행과 충돌될 수 있다.⁸⁾ 그러므로 법원은 유지청구의 판단 시에 그 인용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⁹⁾

이 논문에서는 환경침해를 일으키는 각종 공해발생원 중에서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소음발생의 원인제공자로서 자동차나 비행기 등 교통기관의 운행에 따라 수면과 생활을 방해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청구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학설의 동향과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 및 그 요건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관련 판결 중 일본의 오사카(大阪) 국제공항야간비행유지판결, 국도 43호선 자동차주행유지판결과 우리나라의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자동차소음방지유지판결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민사상 유지청구시 그 제약요소로서 행정권 행사와의 관계, 유지청구 특정상의 제약과 소음공해의 복수오염원에 대한 유지청구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II. 유지청구 인정학설

우선 교통기관에 의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환경침해 가해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그의 의사와 행위를 강제하는 유지청구를 인정하는 학설에는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 환경권설, 불법행위설이 있다.

1. 물권적 청구권설

이 설은 환경침해를 피해자가 지배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점유권과 같은 물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이 권리가 유지청구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¹⁰⁾ 환경오

8) 伊藤進, 公害·不法行爲論, 信山社, 2000, 15頁-16頁.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사전에 금지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순화된 전형적인 소송이라 할 수 있다.

9) 손윤하, 전게서, 368면; 박운길, "유지청구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12권, 1997, 210면 이하; 김상천, 전게논문, 394면.

염이 발생하면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에 의하여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¹¹⁾ 이 설에 의하면 법적 안정성은 있으나 목적물을 갖지 않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경시되거나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또한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지청구의 요건을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유지청구의 청구취지와 주문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 기업의 공공성으로부터 무과실보상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¹²⁾

2. 인격권설

이 설에 의하면 개인의 생명과 더불어 그 기반이 되는 신체 고유의 건강상태 및 정신적 자유라고 하는 인격은 그것을 유지하는 수단인 재산권과 함께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인격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침해행위 즉 질병을 일으키거나 고유의 건강상태를 보다 악화시키거나 건전한 발육을 저해하는 등 신체침해행위 및 현저한 정신적 고통 또는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또는 방해예방, 방해배제를 청구할 권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발전소의 매연, 배수, 기타 조업행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침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때는 배제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¹³⁾ 여기서 환경이익의 보호는 사법적 구제 수준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인격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 할 것이다.

이 설은 환경오염을 절대권인 인격권의 침해라고 보고 그 침해에 대한 배제,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해유지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한편 이 설에 따르면 물권적 청구권설은 인간에 대한 침해인 공해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생활방해의 공해에 관하여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권으로

10) 伊藤高義, 損害賠償法講座(5), 395頁.

11) 김상진, 전계논문, 397면;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된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132면 이하.

12) 홍천용, 전계논문서, 50면.

13) 伊藤 進, 前掲書, 19頁.

서 유지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¹⁴⁾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간의 생명, 신체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이고 침해의 위험에 따른 배타성이 있는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침해예방의 청구권이라고 한다.¹⁵⁾ 이러한 인격적 이익은 인격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오늘날에는 환경침해를 방지함이 없이 인격적 존엄을 지킬 수 없는 것임으로 유지청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헌법상의 인격권이 민사재판에 발현된다고 본다.¹⁶⁾ 이 설에 따르면 침해되는 것은 인간의 쾌적한 생활이나 인체의 건강 등이며¹⁷⁾ 지배권 내지 절대권으로써 인격권, 생활권으로 파악하는 단순인격권설과 그 피해를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가능한 한 소송당사자로서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는 물권적 청구권중시설로 나뉜다.¹⁸⁾ 그러나 이 설은 단지 인격권이라는 개념에 의할 경우 그 요건이 막연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인격권침해에 대한 유지청구는 원칙적으로 각 경우에 따라 받은 불이익의 성질, 정도, 행위의 목적, 태양, 성질 등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그 피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할 한도를 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고 한다.¹⁹⁾

3. 환경권설

이 설에 의하면 인간은 생존에 알맞은 환경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전제조건으로써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 이 환경권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권리로 헌법상 생존권의 귀결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 권리는 재산권과 영업권보다 우위에 있으며 인간은 좋은 환경 하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건강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

14) 澤井裕, 差止請求と利益較量, 法律時報, 1971, 7号, 10頁; 大阪高裁, 昭和 50. 11. 27. 判時 897号, 71頁.

15) 생활향수권에 관한 생활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한 관례: 東京地判, 昭和 43. 9. 10. 判タ 227号, 98頁.

16) BGHZ 13, 334(338); 齊騰傳, 人格權の研究, 日粒社, 1979, 520頁-552頁.

17) 손윤하,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점과 관례동향”, 『인권과 정의』통권 341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26면.

18) 東京地判, 昭和 43. 9. 10. 判タ 227号, 98頁.

19) 伊藤 進, 前掲書, 20頁.

리를 갖는다.²⁰⁾

한편 환경은 헌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동등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단지 개인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집단적 권리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권의 집단적 인권으로써의 성질, 환경 공유의 법리에서 기업 등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를 행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환경권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은 바로 사법상의 권리로써 존중되어야 하며 환경파괴에 대한 유지청구, 손해배상을 위한 사법상의 권리로써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²¹⁾

환경에는 대기, 물, 일조, 토양, 정관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산과 사회적 환경(도로, 공원, 공적시설, 의료시설, 전기, 가스, 상·하수도)도 포함된다. 환경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환경적 침해가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해행위의 사회적 가치(공공성), 손해의 회피성, 선후관계, 행정적 단속기준의 준수, 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하며, 환경이 파괴되거나 위험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요건은 환경권이 배타적 권리이므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며 권리의 내재적 제한에 의한 이익형량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 설에 대해서 권리와 지역적 범위가 불명확하고 개인의 피해를 자기의 피해로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²²⁾ 그리고 환경은 일정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상태이지만 그 요소는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며²³⁾, 그것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지 존재할 상태를 말하는지 그 인식 및 평가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가 있고 보통 일정한 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698면.

21) 伊藤進, 前掲書, 17頁; 大阪辯護士會環境權研究會, 環境權; 木村保男/川村俊雄, 公害訴訟における環境權論の展開 參照.

22) 손윤하, 전개논문, 369면; 廣島地判, 昭和 46. 5. 20. 判時 631号, 24頁; 廣島高判, 昭和 48. 2. 14. 判時 693号, 27頁.

23)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삼영사, 1997, 275면;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6., 538면; 문광섭,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의 제문제」상(재판자료 제94집), 법원도서관, 2002, 300면.

4. 불법행위설

이 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생활이익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효과로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한다.²⁴⁾ 그러나 민법의 불법행위는 그 효과로써 금전배상을 원칙²⁵⁾으로 원상회복을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유지청구권을 인정할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²⁶⁾

5. 검토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함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주체가 되는 권리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국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환경은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이다. 한편 환경이 침해되면 민법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²⁷⁾, 환경권침해여부 판단시 고의·과실이 수인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인간은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을 지배하거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환경 침해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유지청구를 행사 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에 의해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24) 廣島地判, 昭和 36. 4. 10. 判タ 119号, 86頁; 東京地判, 昭和 44. 7. 10. 判タ 238号, 151頁; 東京地判, 昭和 43. 9. 10. 判タ 227号, 89頁.

25) 손운하, 전계서, 369면.

26)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569면.

27)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36-38면; 이용우, 전계논문, 225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²⁸⁾ 소음 등에 의한 적극적 침해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침해에 대해서도 유지청구 할 수 있다.²⁹⁾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Ⅲ. 법적 근거와 요건

1. 법적 근거

소음공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건강악화와 환경오염에 기인한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 유지의 방법으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조업 정지와 단축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이 있다.³⁰⁾ 그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격권, 환경권,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 등에 기인한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 이 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가해행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론」을 적용한다.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는 사업 활동에 장애를 주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정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판례는 손해배상청구시 보다도 높은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다(위법성 단계설).³¹⁾ 유지청구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판단시 각 요소의 중요성의 차이는 있으나 불합리하지는 않다.³²⁾

28) 박윤직, 「물권법(신정판)」, 1992, 312면;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117면; 손윤하, 전게서, 370면; 이영준, 「물권법(전정판)」, 박영사, 1996, 450면;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1998, 465면; 정권섭, “환경오염과 사법상 구제”, 법과 환경, 한국법학교수회편, 149면.

29) 김상천, 전게논문, 410면.

30) 손윤하, 전게서, 368면 이하.

31) 손윤하, 전게서, 368면.

32) 國道 43号線訴訟上告審判決, 平成7・7・7 民集 49卷 7号 1870頁, 2599頁.

위법성 판단시 적용되는 수인의 한도론에 대해서 환경을 지배하고 좋은 환경을 향수하는 권리로써 환경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① 개인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이 침해되거나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지청구가 인정되며 ② 대기, 물, 일조, 경관 등은 인간생활에 불가결한 자원으로 만인이 공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공유자인 지역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환경공유법리」에서 유지청구권자의 범위는 당해 주민 전체에 미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입법행정에 큰 영향을 주거나 또는 판례에 있어 유지판단의 피해의 범위를 고려하고, 적어도 가처분시 유지청구의 피해요건을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 ①을 인정하는 판례는 없는 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개별적 이익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이익을 사권으로서 이해하는데 기인한다.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소송을 사권으로서 환경권에 기한 통상의 민사소송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중의 권리에 기한 특별한 소송내지 특별한 단체소송으로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³³⁾

최근 환경이 공익인지 개별적 이익의 집합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일본판례는 개별적 이익으로 보고 있다.³⁴⁾ 국립경관소송에서 국립시의 대학로 인근에 7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건물의 높이를 20미터 이하로 제한해온 사안에서 형성된 경관에 있어서 호환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은 토지의 소유자 등은 그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부터 형성된 양호한 경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그 유지를 상호간에 청구하는 이익을 갖고(경관이익) 그 침해를 불법행위로 보고 피고에 대해서 건물의 20미터를 초과한 부분의 철거를 명하였다.³⁵⁾ 이 사건은 경관이 권리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에 부가적 가치를 파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유지를 상호간에 청구하는 이익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라고 하고 있지만 경관이 토지에 부가적 가치를 생산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고 오히려 대학로 인근의 주민이 「특정 환경의 공동이익에 관한 관습상의 법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³⁶⁾

33) 林健久・淡路剛久 編, 「二十一世紀への政治経済學」有斐閣, 1991, 205頁; 大塚直, 「環境權」, 法教 171号, 1994, 35頁.

34) 東京地判 平成 14・12・18 判時 1829号 36頁.

35) 東京高判 平成 16・10・27 判時 1877号 40頁.

36) 大塚直, 前掲論文, 法教 294号, 113頁; 富井利安, 環境法判例百選, 162頁.

2. 요건

가. 당사자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이다. 이 유지청구권자의 범위는 물권적 청구권설에 의하면 소유자, 용익권자, 관습상 사용자, 상린관계에서의 보호를 받을 자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이외에 인격권설에 의하면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 불법행위설에 의하면 위법한 침해행위로 환경이익을 침해당한 자, 환경권설에 의하면 물권유무를 불문하고 환경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피해자로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나. 성립요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의 요건으로는 계속적으로 소음공해가 있을 것과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정도를 초과하여야 한다.³⁷⁾ 수인한도론 하에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의 종류, 개연성과 그 사업 활동의 사회적 공공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의 교통기관에 의한 소음과 대기오염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위법성 판단시 ①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내용 ② 침해행위의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③ 수익과 수인의 상호보완성 ④ 피해방지에 관한 조치의 내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유지청구에 대해서는 ① 피침해 이익의 성질과 내용 ② 침해행위의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에 대하여 비교형량하고 있다. ② 침해행위의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판단에 당해 도로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유지, 존속에 불가결한 것은 아니라는 데 대해서 유지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가 인접해 있는 주민과 기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지역간의 교통이 산업경제활동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판단근거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성의 판단에서 어떻게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가 다른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로의 부유입자상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에 관해서 ① 피침해 이익의 성

37) 손윤하, 전게서, 371면.

질과 내용은 사람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로인근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질환을 유발하므로 특별히 강한 위법성이 존재하며, ② 침해행위의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도로의 공용제한이 중대한 공익상의 관심사로 유지를 필요하게 한다.

일본의 나고야남부소송의 부작위판결에서는 도로의 점유공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비록 공해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침해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 활동의 공공성이 높으면 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동경대기오염소송 제1심 판결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청구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의학적 견해 등으로부터 충분하게 증명된 유지의 기준치, 오염농도를 인정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다른 판결에서는 조사한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치가 일정수치에 달하는 경우에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나고야남부소송판결에서 동 조사의 수치는 일정 한도에서 유지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법원은 통상기준으로 개연성이 높은 기준치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한편 사전유지의 경우 하급심 판례에서 시설의 안정성의 흠결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점에 관한 자료는 모두 피고가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안정성의 흠결에 대하여 입증하면 피고 측이 반증하여 피고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안정성의 결여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유지청구시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시설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료에 의한 인과관계증명이 매우 중요하다.³⁸⁾

38) 名古屋高判, 平成 10・12・17 判時 1667号 3頁.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안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이로 인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결과발생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IV. 소음방지를 위한 유지청구 판례

1. 일본 판례

가. 오사카 국제공항야간비행유지청구

이 사건에서는 오사카(大阪) 국제공항의 야간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문제되었다. 원심에서 공항이용행위와 같이 공익성 있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소음공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그 수인의 한도를 판단하였다.³⁹⁾ 이 사건에서 비행기소음의 수인한도는 애매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정 및 지역성 등 기타 사정을 비교형량해서 손해가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통상 수인할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⁴⁰⁾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하자판단시 수인한도론의 확대적용에 대해서 도카이도(東海道)신간선소송과 요코다(横田)공군기지공해소송⁴¹⁾에 있어서도 인용되고 있고, 학설에서도 기능적 하자가 있는 공항인지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는 비행기소음은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⁴²⁾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⁴³⁾ 법원은 i) 공항의 공공성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유지나 존속에 불가결한 절대적인 의무제공이 아니고, ii) 비행기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의 정도, 피해내용의 범위, 중대성이 존재하며, iii) 공항의 공용에 의한 공공 이익의 실현이 일부 소수자의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여 불공평하고, iv) 사전조사의 예측과 피해의 방지, 경감조치가 강구되지 않았으며, v) 제반 피해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경감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수인한도는 공항공용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있다. 공항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공항의 공공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된다. 공공성도 일본국가배상법 제2조의 항면사유로서 불가항력에 의해서 법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⁴⁴⁾

39) 大阪地判 昭和49. 2. 27., 判時 729号 3頁; 大阪高判 昭和50. 11. 27., 判時 797号, 36頁.

40) 淡路剛久, 公害賠償の理論, 198頁.

41) 東京地八王子支判 昭和56. 7. 13., 判時 1008号, 19頁.

42) 古崎慶長, 「大阪空港控訴審判決と國家賠償責任」, 判時 797号, 13頁.

43) 伊藤 進, 前掲書, 11頁.

이 판결은 이 방법을 원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성의 비중을 피해보다도 과중하게 다루는 것은 구성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공공성은 수인한도의 요소로 일반이익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반대설에 의하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공항의 공공성(공익성과 필요성)과 대비해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이상 그 가해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다수설과 마찬가지로의 논리에서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국가사업의 집행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행위를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적 사업과의 관계에서 수인한도의 정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당해 사업의 공공성의 성질, 내용에 따른 수인한도의 한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성이 높다면 그에 상응하게 수인한도의 한계도 높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국가사업의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정신적 고통, 생활방해와 같은 비재산적 피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련 피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신체에 심각한 가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 이유로서 근대국가는 제반 공공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채무를 지고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국민은 관련 사업 활동에 의해서 직, 간접의 혜택을 받으므로 사업활동 속에 고도의 공공성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범위의 희생에 대해 국민의 수인이 요구되는 것이 부득이하다 할 것이다. 한편 고도의 공공사업이 국민의 생존에 불가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희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특히 개인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에서 위험으로의 접근도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이는 수인한도의 한계를 고양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써 포함되었지만 통설적 견해와는 다르다. 즉 학설은 위험으로의 접근을 인정하는 것은 환경과피자에게 환경전유권(環境專有權)을 인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⁴⁵⁾, 적어도 주민의 일상생활을 밀바닥으로부터 파괴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까지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⁴⁶⁾고

44) 古崎慶長, 前掲書, 13頁.

45) 清水誠, 「損害賠償請求について」, 法時, 公害裁判, 第4集, 34頁; 山口和男, 「騒音の規制と被害者の救済」, 法曹時報 24卷 105号, 50頁; 潮海一雄, 「公害訴訟における損害論」, 判タ 314号, 34頁.

46) 加藤一郎編, 前掲書, 410頁; 淡路剛久, 「大阪國際空港公害判決の問題點」, ジュリスト 559号, 43頁.

주장한다. 또 비교법적으로 독일 임밋시온의 법리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⁴⁷⁾, 영미법의 「불법방해(nuisance)」법리의 불법방해(nuisance)로의 접근, 선주권(先住權)의 논리 등이 고려할 중요한 요인⁴⁸⁾ 인지 문제된다. 이러한 위험으로의 접근은 수인한도의 이론을 고양하기 위해서 수인한도의 판단요소로 광범위하게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즉 원심은 위험으로의 접근에 대해서 B활주로공용개시 후에 입주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는 때는 사정의 정도보다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정이 어떠한지 보다 제약요건으로써 다음 2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적 고통 내지 생활방해의 경우 직접적으로 생명, 신체에 관한 피해가 있는 때는 달리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피해의 중대한 위험으로의 접근이론의 적부가 고려되어 주목된다. 둘째, 피해자가 인식한 소음으로부터 피해가 있으면 적용되지만, 그 정도를 넘는 피해가 있는 경우, 입주 후에 소음의 정도가 증대된 사정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으로의 접근을 수인한도판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지만 이것을 포함하는 이상 이와 같이 사태의 악화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위험으로의 접근여부 판단의 논쟁은 필연적이어서 그 이유에 따라 적용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 특히 반대설에서 강조되어 원심에서 판시한 것처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 내용 및 성질은 일상 특히 야간에 있어서 반복적인 항공기 소음의 계속에 따른 신체적 피해와 각종 생활방해로부터 발생하는 누적적 고통으로 이와 같은 피해는 거주함으로써 비로소 체득되어 일시적인 소음의 경험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인식된 소음으로부터 추측된 피해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위험으로의 접근이론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나. 국도 43호선 자동차주행유지청구

오사카시(大阪市)로부터 고베시(神戸市)사이의 총연장 약 30킬로미터의 간선도로

47) 澤井裕, 公害の私法的研究, 25頁, 428頁 以下.

48) 澤井裕, 前掲書, 25頁, 428頁; 塚本重頼, 英國不法行爲法要論, 304頁.

인 국도 43호선 도로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은 국가와 고속도로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이 도로상의 자동차교통으로 인한 소음, 이산화질소에 의한 공해방지를 위하여 일정 한도를 넘는 자동차 주행을 하지 않을 유지청구를 제기하였다.⁴⁹⁾ 항소심인 오사카 고등법원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 주행을 하지 않을 유지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는 아직 사회생활상 수인의 한도를 초과할 정도는 아니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⁵⁰⁾ 이에 주민들은 일본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원심에 의하면 도로상의 자동차교통으로 인한 소음 등이 거의 온종일 인근 도로 생활공간에 유입되는 침해행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에 의해 수면방해, 대화, 전화통화, 가족모임, 텔레비전시청, 라디오 청취 등에 대하여 방해 및 그 악순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이 도로로부터 2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배기가스 중의 부유입자물질에 의해 세탁물이 오염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이 도로는 산업물자의 유통을 위한 지역간 교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와 화물 및 여객수송에 있어서 자동차수송을 분담하는 등 그 기여도가 높으며, 산업정책 등의 각종 정책상의 요청으로 설치된 간선도로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큰 이익을 주고 있으나 이 이익과 피해 사이에 상호보완관계는 아니다. 이 도로의 교통량의 추이는 도로개설 당시의 예측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에 의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대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지만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도로의 공공성 내지 공익상의 필요로 인해 인근 주민이 받은 피해는 사회 생활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공해대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환경기준 및 일본 소음규제법 제1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정지역 내에서 자동차소음 한도의 가치를 참작하여 ① 거주지의 옥외등가소음기준인 65데시벨 이하의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 장단을 불문하고 수인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② 이 사건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i) 그 전원이 배기가스 속의 부유입자상 물질에 의해 수인

49) 第1審 神戸地方法院判決 昭和61(1986)·7·17 判例時報 1203号 1頁.

50) 大阪高等法院判決 平成4(1992)·2·20 判例時報 1415号 3頁.

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고 ii) 소음 및 배기가스에 의한 피해 이외에 심리적 피해 등을 수반하는 옥외등가소음기준이 6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자는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거주지에 있어서 옥외등가소음기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를 보조적 기준으로 한 기준설정이 불합리한 바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본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의 일부가 상고한 유지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근 주민들에 의해 도로 등 시설의 공용금지 등의 유지청구시 위법성의 판단시 각 요소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인지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상고를 기각했다.⁵¹⁾

2. 우리나라 판례

우리나라 대법원은 최근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차량 소음방지유지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는 1992. 7. 14.경 완료되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 빌라는 1992. 11.말경 준공된 것이어서 피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료되었다. 경기도 부천시는 이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 공사를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년 전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빌라의 건축주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그 지상에 빌라가 신축되었고, 위 확장공사 준공 전에 빌라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부지의 매도인으로서 빌라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빌라의 높이 및 구조 등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다.

빌라 거주자들에 대한 이 구간 경인고속도로의 소음피해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1997. 8.경부터이다. 부천시는 이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장공사 당시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2001. 8. 5.경에는 통행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2001. 10.경에는 도로평탄화를 위한 내유동성 포장을 하였으나, 빌라 각 세대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할 결과, 1일 평균 소음도는 66데시벨에서 78데시벨까지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소음에 대

51) 民集 49卷 7号 2599頁.

한 빌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부천시는 이 지역을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차량에 대한 속도제한, 우회 등의 조치를 하거나, 방음시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천시는 차량운행 등을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은 기존 방음벽의 옹벽을 이용하여 보강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의 방음벽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빌라의 최고층인 4층의 높이가 12m 정도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13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방음벽공사를 위한 공사비용은 7.5m로 보강할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13m로 보강할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유지청구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⁵²⁾ 이 사건 B빌라, C빌라, D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주민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부천시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는 1992. 7. 14.경 완료되고, 빌라는 1992. 11.말경 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료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년 전 그 소유였던 빌라 부지를 빌라의 건축주에게 매도하여 그 지상에 빌라가 신축되었고, 위 도로확장공사의 준공 전에 빌라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부지의 매도인으로서 빌라의 주민들에게 소음피해가 없도록 그 높이 및 구조 등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도로변 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낮에 65데시벨, 밤에 5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에 대한 고속도로의 소음피해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1997. 8.경부터인데, 부천시는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장공사 당시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2001. 8. 5.경에는 통행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2001. 10.경에는 도로포장을 하였으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⁵³⁾ 제5장 제1절 1의 (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빌라 각 세

52)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 2003나75895(반소) 판결.

대의 외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민들 주거지의 1일 평균 소음도는 66데시벨에서 78데시벨까지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 지역을 소음·진동 규제법 제28조 소정의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통행차량에 대한 속도제한, 우회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방음시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부천시가 차량운행 등을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한다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빌라 주민대표와 부천시가 참석한 2000. 2. 22. 및 같은 해 3. 3.차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회의에서 현재의 방음벽 옹벽을 이용하여 높일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민들이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하며 방음벽 높이 조정에 반대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4층 세대 높이가 지상 12m에 이르러 7.5m 높이의 방음벽으로는 전체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소음방지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도 장기간 방음벽 보강 공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1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보강하라는 내용의 재정이 내려지자, 부천시가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경기도 부천시가 관리하는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⁵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⁵⁵⁾ 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53) 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 12. 31.

54)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5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참조.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⁵⁶⁾ 또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⁵⁷⁾

부천시가 관리하는 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신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주민들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이후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민들의 유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빌라 주민대표와 부천시가 현재의 방음벽 옹벽을 이용하여 높일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빌라의 4층 세대 높이가 지상 12m에 이르러 7.5m 높이의 방음벽으로는 전체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소음방지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도 장기간 방음벽 보강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5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등 참조.

57)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2002. 2. 14.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1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보강하라는 내용의 재정이 내려지자 이를 다투기 위하여 원고가 제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천시와 주민들 사이에 성립된 합의는 당사자간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등으로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환경침해시 피해자는 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 유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 제217조에 의해 토지소유자는 소음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⁵⁸⁾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고, 비록 주민들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이후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지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의 우리나라 판결에서 보듯이 경인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소음은 1일 평균 소음도가 66데시벨에서 78데시벨⁵⁹⁾로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변 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낮에 65데시벨, 밤에 5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유지청구의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위법성을 요구하며 차이를 두어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유지청구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환경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보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해당지역의 주민 전체로 보고 있다.

58) 김상천, 전제논문, 407면 이하.

59)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V. 유지청구의 제약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유지소송이 증가하여 하급심에서 공공사업과 대규모시설의 유지를 인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 국제공항야간비행유지청구소송 항소심 판결⁶⁰⁾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항공기의 이착륙의 유지를 인용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판례에서 민사상 유지청구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의 제약이 문제 되었다. 첫째는 행정권 행사상의 제약, 둘째는 유지청구 특정상의 제약이다.

1. 행정권 행사상의 제약

첫째, 오사카 국제공항소송 상고심 판결⁶¹⁾에서 당시 교통부장관은 행정처분으로 국제공항의 항공규제권과 공항관리권을 보유하고, 이러한 권리는 불가분 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민사소송이 부적절하여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많은 다툼이 있었다. 그 후 일본자위대기의 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에 관하여 비행기 이착륙의 권한행사는 방위청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나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보았다.⁶²⁾ 일본에서는 이 판례에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개별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여부 판단시 종래 학설,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제3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면 이것을 규제하는 명시적 특별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이 공법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소음의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구체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⁶³⁾, 반대로 초과하는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소음

60) 大阪高判 昭和 50・11・27 判時 797号 36頁.

61) 最判 昭和 50・12・16 民集 35卷 10号 1369頁.

62) 最判 平成 5・2・25 民集 47卷 2号 643頁.

63)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고.

의 침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공공성의 성질, 내용에 따라 수인한도에 비하여 공공성이 높으면 그에 상응해서 수인한도의 정도도 높아야 한다.⁶⁴⁾ 그리고 도로건설과 항공기 이착륙과 같은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국책사업의 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정신적 고통, 생활방해와 같은 비재산적 피해인 경우에는 관련 피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해야 한다. 국가는 제반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채무를 지고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국민은 관련 사업 활동에 의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음으로 사업활동 속에 공공성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희생에 대해 국민의 수인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공공사업활동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국민은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상의 행위가 국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것이 아닌 한 국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행해져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유지청구 특정상의 제약

둘째, 피해자가 자기 주거지에 기준치 이상의 소음과 일정농도 이상의 오염물질의 방지를 위한 추상적 유지청구(추상적 부작위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 예전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부정되었다. 이 후 판결절차상 소송요건과 사건 심리 및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청구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⁶⁵⁾ 그러나 최근 단일오염원의 소음에 관한 것이지만 일본최고재판소가 이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⁶⁶⁾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로 인한 차량소음방지유지청구⁶⁷⁾와 일본의 국도 43호선소송의 판결에서 이러한 유지청구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⁶⁸⁾ 한편 도시형 복합오염의 경우 오염물질의 배출원은 피고 가해자 이외에도 존재하고 피고의 배출물질과 피고 이외의 배출물질을 구별할 수 없어서 유지청구시 소송물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⁶⁹⁾

64) 손윤하, 전계논문, 28면.

65) 손윤하, 전계서, 372면; 名古屋高判, 昭和 43・5・23 下民 19卷, 5,6号 317頁.

66) 最判 平成 5・2・25 判時 1456号 53頁.

67)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참조.

68) 大塚直, 國道 43号線訴訟上告審判決 判タ 918号 68頁 參照.

학설 또한 추상적 유지청구가 적법하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는 통상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유효한 방지조치를 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가해자는 방지조치를 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② 이것을 실체법상 해석에 반영하여 피해자는 방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는 조치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⁷⁰⁾ 그리고 재판절차상 제소시에는 일응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방어반응과 소송심리의 추이를 보아 이것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법원도 석명권 행사에 의한 변경을 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소송물을 기능적 혹은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학설이 있고⁷¹⁾, 제소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권리침해의 발생원과 침해결과에 의한 특정으로 충분하다고 한다.⁷²⁾ ②의 점에 대해서는 유지의 근거로 물건적 청구권, 인격권, 불법행위청구권이 실체법상 상대방에 대한 부작위청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의 선택을 인정할 수 있다. 일부 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판결절차에 있어서 심리와 피고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의 특징이 요청되고 있지만 소송을 단계적, 기능적으로 고찰하는 최근의 학설에 따르면 소 제기시 소송물의 특징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오염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피고 이외의 가해자에 의한 배출 물질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실제 판례⁷³⁾에서는 손해배상청구시 가해자 전체의 기여도에 의한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한편 오염원이 복수인 경우 다른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것을 포함한 목표치만을 나타내는 개별주체에 대해서 유지를 명한 때는 개별주체에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도한 의무가 부과될 우려가 있지만⁷⁴⁾, 이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감소율을 정하면 되지만 개별 주체의 책임한도를 넘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9) 川崎 第1次 訴訟判決.

70) 松本博之, 抽象的不作為命令を求めらる差止請求の適法性, 自由と正義, 34卷, 4号, 1983, 33頁.

71) 三月月章/中野貞一郎/竹下守夫 編, 松浦馨, 差止請求の強制執行, 新版 民事訴訟法演習 2, 有斐閣, 1983, 281頁; 井上治典 外, これからの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1984, 47頁.

72) 竹下守夫, 生活妨害の差止と強制執行・再論, 判タ 428号, 1981, 32頁.

73) 西淀川 第1-4次訴訟判決, 川崎 第1-4次 訴訟判決.

74) 西淀川 第2-4次訴訟判決.

VI. 복수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유지청구

최근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복수의 소음발생원의 유지(留止)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다. 개별주체가 주요 소음발생원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유지청구는 부적법하지만 소음발생원이 복수이면서 그 상호간에 밀접한 주종관계가 있다면 연대유지청구가 가능하다. 학설상으로는 ① 개별적 유지설 ② 분할적 유지설 ③ 연대적 유지설로 나뉘고, 이외에 연대적 유지설에 있어서 유지청구의 상대방으로서 피고는 다른 소음발생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당해 소송에 참가시켜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시킨다는 ④ 인입설이 있다.

① 개별적 유지설은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발생원이 각각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하게 되면 유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한 개개 소음공해 발생원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 유지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설에 따르면 개개 소음공해 발생원에 의한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소량의 소음이 집적되어 소음공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④ 인입설에 대해서는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가 소음공해를 유발시킨 피고의 수를 증가시켜 당해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하여 그 소송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소음공해로 인하여 학설상의 다툼이 있는 것은 ② 분할적 유지설과 ③ 연대적 유지설이다. 분할적 유지설은 오염원인 복수기업을 피고로 해서 소음공해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 이하로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각 기업은 그의 기여도에 대한 주장증명 정도에 따라 귀책되게 되고, 연대적 유지설은 복수의 소음공해자로부터 유발되는 소음에 대해 유지기준을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소음공해 발생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그 기준 이하로 유지청구할 수 있다. 이 설은 헌법상의 자유권, 생존권, 민법상의 정당방위, 긴급피난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후자는 법해석론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주목되는 것은 분할적 유지설의 주장자 중에 유지청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소음의 정도와 수치를 기본으로 하여 각 피고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소음의 정도를 정하면 되고 손해배상과 같이 피고의 반증과 기여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⁷⁵⁾ 예를 들면 원고에게 인접해 있고 해당 지역의 소음기여도가 50%에 달

75) 澤井, 公害差止の法理, 160頁.

하는 甲과 원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음기여도가 1%인 乙이 있다면, 원고 거주지의 소음정도가 적법수준의 2배에 달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소음발생원의 소음정도를 그대로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甲과 乙의 소음공해에 대한 기여도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 데, 소음수치와 그로 인한 공해정도가 정비례하는지는 문제이다.⁷⁶⁾ 연대적 유지설 하에서 통상 피고인 가해자는 자기의 소음수치가 0일 때까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⁷⁷⁾ 그러나 이 설에 의하면 가해 발생원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다른 발생원의 소음공해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수치가 적다고 할지라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조업이 정지될 수 있게 된다.⁷⁸⁾ 이러한 경우 집행방법을 간접강제에 의하여 가해 발생원이 유지를 하지 않는 한 통상 금전배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분할적 유지설을 취하여 복수의 공해발생원에 의한 소음공해를 유지기준 이하로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⁷⁹⁾, 일률적으로 소음공해를 유지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법에 따르면 원고의 추상적 유지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VII. 결론

소음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이 침해되는 경우 민법 제214조, 제217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소음 등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게 되면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⁸⁰⁾ 생활방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권자는 피해자이다. 그 피해자는 소유자, 용익권자, 관습상 사용자, 상린관계에서의

76) 牛山積, 公害法の課題と理論, 175頁.

77) 淡路, ジュリ 844号 95頁.

78) 澤井, 前掲書, 158頁.

79) 牛山積, 前掲書, 174頁.

80) 곽윤직, 전게서, 312면; 김기수, 전계논문, 117면; 손윤하, 전게서, 370면; 이영준, 전게서, 450면; 이은영, 전게서, 465면; 정권섭, 전계논문, 149면.

보호를 받을 자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요건은 소음공해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법하다고 보고, 비록 거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고 입주하였다 할지라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유지청구의 판단시 고도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지청구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환경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보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해당지역의 주민 전체로 보고 있다. 한편 국가는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며, 국민은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직, 간접 혜택을 받음으로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희생에 대해 수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상의 행위가 국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보전되어야 한다.

개별주체만이 주요 소음발생원이라 할 수 없고, 소음발생원의 상호간에 밀접한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연대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개별적 유지설, 분할적 유지설, 연대적 유지설로 나뉘고, 이외에 연대적 유지설에 있어서 다른 소음발생원을 공동피고로 당해 소송에 참가시켜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시킨다는 인입설이 있다. 기업은 유지를 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금전배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분할적 유지설에 따라 복수의 공해발생원에 의한 소음공해를 유지기준 이하로 한다. 이 설에 의하면 소송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소음공해를 유지기준 이하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신정판)」, 박영사, 199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기수,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방향과 상린관계적 구성”, 「환경법연구」 창간호, 한국환경법학회, 1979.
- 김상천, “환경침해의 유지청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07.
-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 문광섭,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 「환경법의 제문제」상(재판자료 제94집), 법원도서관, 2002.
- 박운길, “유지청구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12권, 1997.
-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 ,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점과 판례동향”, 「인권과 정의」 통권 341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 이영준, 「물권법(전정판)」, 박영사, 1996.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1998.
- 이용우, “공해방지소송”, 「재판자료」 제2집, 법원행정처 1979.
- 전경운, “환경침해피해의 사법상 구제법리”, 「환경법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3.
- 천병태·김명길, 「환경법론」, 삼영사, 1997.
- 홍천용,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 「환경법연구」 제14권, 한국환경법학회, 1992.
- 齊騰傳, 人格權の研究, 日粒社, 1979.

伊藤 進, 公害・不法行為論, 信山社, 2000.

林健久・淡路剛久 編, 「二十一世紀への政治経済学」有斐閣, 1991.

大塚直, 「環境権」, 法教 171号, 1994.

松本博之, 抽象的不作為命令を求め差止請求の適法性, 自由と正義, 34巻, 4号, 1983.

三ヶ月章/中野貞一郎/竹下守夫 編, 松浦馨, 差止請求の強制執行, 新版 民事訴訟法演習 2, 有斐閣, 1983.

井上治典 外, これからの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1984.

竹下守夫, 生活妨害の差止と強制執行・再論, 判タ 428号, 1981.

[Zusammenfassung]

Unterlassungsanspruch zur Abwehr der Lärmimmission

Lee, Seung Woo

Geschuldet wird nicht nur künftige Untätigkeit, sondern auch ein Verhalten, das den Nichteintritt der drohenden Beeinträchtigung bewirkt. Unterlassungsanspruch deckt sich inhaltlich, wenn Nichtbeseitigung gleichbedeutend mit Fortsetzung der Beeinträchtigungshandlung. Mittelbarer Störer muß gegenüber unmittelbarer Störer alle ihm rechtlich gegebenen Möglichkeiten ausschöpfen, um Beeinträchtigungen durch diese auszuschließen. Die Lärmimmissionswerte orientieren sich am Charakter des von der Immission betroffenen Whongebietes. Die subjektiv empfundene Lärmbelastung ist abhängig von der Einstellung zur jeweils vorhandenen Lärmquelle. Die Lärmimmissionswerte stellen allgemeine Erfahrungssätze dar und sind wegen ihrer Ausrichtung auf nachbarschaftlichen Ausgleich eher zu hoch als zu niedrig angesetzt. Daher hat der Gericht die Anerkennung der durch die Immissionswerte festgelegten Grenzen dahin eingeschränkt, daß auch Immissionen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wegen ihrer besonderen Lästigkeit im Einzel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darstellen können.

Bei Überschreiten der dort angegebenen Lärmimmissionswerte des Flughafens und der Autobahn ist in jedem Fall eine wesentliche Beeinträchtigung anzunehmen. Das Gesetz hat trotz Festsetzung von Lärmschutzbereichen, Regelung der Erstattung von Aufwendungen für Lärmschutzmaßnahmen die nachbarrechtlichen Beziehungen nicht abschließend geregelt. Der zur Abgrenzung der Schutzzonen im Lärmschutzbereich festgesetzte Dauerschallpegel gibt ebenso wie die Immissionswerte der Lärm hinsichtlich anderer Geräuschimmissionen nur einen Anhaltspunkt, nicht jedoch einen endgültigen Maßstab dafür, ob eine Beeinträchtigung wesentlich ist oder als noch zumutbare Belästigung

hingenommen werden muß. Im Bereich unterhalb der Richtwerte sind die entwickelten Beurteilungsmaßstäbe anzuwenden.

주 제 어 유지청구, 소음공해, 침해행위, 판단기준, 손해배상

Key Words Unterlassungsanspruch, Lärmimmission, Beeinträchtigungshandlung, Beurteilungsmaßstab, Schadensersatz